

‘우리회사 주치의’ 사업 안내

□ 인천근로자건강센터는

- 인천지역 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근로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 ‘우리회사 주치의’ 사업

- 안전보건관리가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안전보건 취약계층에 대하여 인천근로자건강센터가 ‘우리회사 주치의’가 되어 근로자 건강관리, 직업환경관리 등 근로자의 업무상질병예방을 위하여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학전문의(직업환경/가정의학), 산업간호사, 상담심리사, 산업위생기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직종별, 유해인자별 건강상담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주를 위한 컨설팅,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회사 주치의’ 사업의 필요성

-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후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사내 건강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언제든지 ‘우리회사 주치의’와 상의할 수 있고, 또한 유해물질 등 직업(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 건강에 어떠한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우리회사 주치의' 세부 사업

1.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 직업병 및 직업관련성 질환 상담
- 일반 검진 및 특수 검진 결과 상담(검진 후사후관리)
- 기타 만성질환 및 일반 질환 상담
-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2. 뇌심혈관계질환 예방관리상담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및 결과 상담
- 금연 프로그램(금연 보조제 지급)
- 직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 상담
- 참여형 개선기법(PAOT)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상담

- 직종별 작업유해요인 분석 및 작업자세 교육
- 직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 개인별 맞춤 운동 지도 및 스트레칭 교육
- 체력 측정 및 균형능력 평가



4. 작업환경상담

- 노출유해인자에 대한 교육
- 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관리방법 상담(MSDS/GHS)
- 올바른 보호구 착용방법 상담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활용상담
-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지원



5.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

- 감정노동자를 위한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
- 자율신경균형검사(HRV) 등 직무스트레스 평가
-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 집단상담(미술, 사진, 힐링 프로그램)



※ 우리회사 주치의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건강검진 사후관리는 **유소견자의 건강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건강검진을 시행한 후 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적 조치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0호)



제 3장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동법 시행규칙 제 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나.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60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 의사의 사후관리¹⁾ 소견에 따라 조치토록 규정(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되어 있습니다.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건강센터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2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호)에 따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참여시간을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 ③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61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같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표 8] <개정 2016. 10. 2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인천근로자건강센터 운영사진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

협약 사업장 이동상담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전문건강상담 이용절차



□ 운영시간

- 운영시간 : 센터) 월~금 / 오전 9시~오후 7시 (법정공휴일 휴무)
 분소) 월~금 / 오전 9시~오후 7시 (법정공휴일 휴무)

□ 위치

- 센터 :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 분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지하1층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스캔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문의 : 센터)1577-6497 , 032-260-3666 / 분소)032-528-1155
- FAX : 센터)032-260-3667 / 분소)032-528-1156
- E-mail : icwhc6497@gmail.com
- 홈페이지 : www.icwhc.or.kr

※ 아래 해당 부분을 V 하시어 팩스 전송 부탁드립니다. (FAX : 032-260-3667)

V	1. 신청합니다 - 아래 사후관리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V	2. 신청하지않습니다 - 사유 (V) 보건관리대행중 대행기관 : (V) 기타 :

사후관리 신청서

사 업 장 명			
사업장관리번호	사후관리소견서 첫 장 오른쪽 상단 참고	근로자수	총 명
사 업 장 주 소			
주 생 산 품		대 표 자 명	
연 락 처		F A X	
안 전 보 건 담 당 자		직 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회사 주치의 신청 사업장 담당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 수집·이용목적 : 사업장 우리회사 주치의 서비스 안내, 근로자 건강 진단 사후관리 안내 및 안전보건자료 제공 등 서비스 제공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무실·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이메일,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질병요관찰자 인원 및 질병유소견자 인원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거부할 경우 근로자건강센터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담당자 : _____ (서명)

본 사업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요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사업주(대표) : _____ (인/서명)

※ 접수방법 : 신청서와 2020년 건강검진결과(특수건강진단결과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 팩스 : 032-260-3667

- 이메일 : icwhc6497@gmail.com [이메일 접수 시 에는 스캔 후 PDF파일로 보내주세요]